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06020		
등록번호	150111-0060206		
상 호	주식회사 바이오리넥스 주식회사 바이오리넥스 (BIORUNX Co.,Ltd.)		변경 등기
			2018.05.02 변경 2018.05.15 등기
본 점	충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학교내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내 충청북도 충주시 서원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내 충청북도 충주시 서원구 충대로 1(개신동, 충북대학교 내)		변경 등기
			2006.11.20 변경 2006.11.29 등기
			2014.07.01 행정 구역변경
			2014.07.01 등기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8.05.15 등기
공고방법	충주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일보에 게재한다.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orunx.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일보에 게재한다.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orunx.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일보에 게재한다.		변경 등기
			2018.05.02 변경 2018.05.15 등기
			2018.05.15 경정 2019.04.15 등기 2019.04.15 신청 착오
1주의 금액	금 500 원		변경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200,000 주 10,000,000 주		변경 등기
			2007.04.02 변경 2007.04.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800,000 주	금 400,000,000 원	변경
보통주식	800,000 주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01,200 주		2002.08.20 변경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45분00초

등기번호	00602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901,200 주	금 450,600,000 원	2002.08.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306,000 주		2002.11.06 변경
보통주식	1,306,000 주	금 653,000,000 원	2002.11.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306,000 주		2002.11.06 변경
보통주식	1,306,000 주	금 653,000,000 원	2002.11.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472,347 주		2005.09.21 변경
보통주식	1,472,347 주	금 736,173,500 원	2005.09.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547,347 주		2005.11.30 변경
보통주식	1,547,347 주	금 773,673,500 원	2006.02.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719,350 주		2006.03.21 변경
보통주식	1,719,350 주	금 859,675,000 원	2006.03.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989,350 주		2006.06.03 변경
보통주식	1,989,350 주	금 994,675,000 원	2006.06.0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19,275 주		2006.06.29 변경
보통주식	2,019,275 주	금 1,009,637,500 원	2006.06.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53,610 주		2007.05.03 변경
보통주식	2,053,610 주	금 1,026,805,000 원	2007.05.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117,110 주		2007.05.19 변경
보통주식	2,117,110 주	금 1,058,555,000 원	2007.05.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136,610 주		2007.05.31 변경
보통주식	2,136,610 주	금 1,068,305,000 원	2007.06.0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273,220 주		2007.06.08 변경
보통주식	4,273,220 주	금 2,136,610,000 원	2007.06.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393,220 주		2007.08.23 변경
보통주식	4,393,220 주	금 2,196,610,000 원	2007.08.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93,220 주		2007.10.31 변경
보통주식	4,793,220 주	금 2,396,610,000 원	2007.10.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953,220 주		2008.11.26 변경
보통주식	4,953,220 주	금 2,476,610,000 원	2008.11.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441,927 주		2013.06.12 변경
보통주식	5,441,927 주	금 2,720,963,500 원	2013.06.1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727,927 주		2020.01.11 변경
보통주식	5,727,927 주	금 2,863,963,500 원	2020.01.13 등기

목	적
1. 위암진단법 개발 및 판매	<2007.07.27 삭제 2007.08.08 등기>
2. 위암진단키트 제조 및 판매	<2007.07.27 삭제 2007.08.08 등기>
3. 위암치료법 개발 및 판매	<2007.07.27 삭제 2007.08.08 등기>
4. 위암치료제 제조 및 판매	<2007.07.27 삭제 2007.08.08 등기>
5. 암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및 판매	<2007.07.27 삭제 2007.08.08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45분00초

등기번호	006020
------	--------

6.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07.07.27 삭제	2007.08.08	등기>
1. 암진단법 개발 및 판매	<2007.07.27 변경	2007.08.08	등기>
1. 암치료제 제조 및 판매	<2007.07.27 변경	2007.08.08	등기>
1. 치매진단법 개발 및 판매	<2018.05.02 변경	2018.05.15	등기>
1. 골질환치료제 제조 및 판매	<2007.07.27 변경	2007.08.08	등기>
1. 암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2018.05.02 변경	2018.05.15	등기>
1. 의약품 생산 및 판매	<2007.07.27 변경	2007.08.08	등기>
1. 치매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2018.05.02 변경	2018.05.15	등기>
1. 건강, 기능성 식품, 음료 생산 및 판매	<2007.07.27 변경	2007.08.08	등기>
1. 골질환치료제 제조 및 판매	<2018.05.02 변경	2018.05.15	등기>
1.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07.07.27 변경	2007.08.08	등기>
1. 의약품 생산 및 판매	<2018.05.02 변경	2018.05.15	등기>
1. 건강, 기능성식품, 음료 생산 및 판매	<2018.05.02 추가	2018.05.15	등기>
1. 연구지원 서비스	<2018.05.02 추가	2018.05.15	등기>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18.05.02 추가	2018.05.15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배석철 580909 *****	2004년 11월 27일 중임	2004년 12월 13일	등기
	2007년 02월 26일 사임	2007년 03월 08일	등기
이사 이광열 660103 *****	2004년 11월 27일 퇴임	2004년 12월 13일	등기
이사 김원재 540807 *****	2004년 11월 27일 중임	2004년 12월 13일	등기
	2006년 04월 17일 사임	2006년 04월 17일	등기
대표이사 배석철 580909 *****	충주시 흥덕구 개신동 10 삼익아파트 107-302		
	2004년 04월 13일 사임	2004년 04월 27일	등기
감사 조태원 500217 *****	2004년 02월 26일 중임	2004년 03월 11일	등기
	2007년 02월 26일 중임	2007년 03월 08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퇴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이사 신인수 500104 *****	2002년 08월 30일 취임	2002년 09월 11일	등기
	2005년 08월 10일 사임	2005년 08월 23일	등기
대표이사 김원재 540807 *****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3 삼성빌라 4-304		
	2004년 04월 13일 취임	2004년 04월 27일	등기
	2004년 11월 27일 중임	2004년 12월 13일	등기
	2005년 08월 10일 사임	2005년 08월 23일	등기
이사 이용희 680311 *****	2004년 11월 27일 취임	2004년 12월 13일	등기
	2007년 02월 26일 사임	2007년 03월 08일	등기
이사 신인수 500104 *****	2005년 08월 10일 취임	2005년 08월 23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45분00초

등기번호	006020					
2008년 08월 10일 퇴임			2009년 04월 09일 등기			
대표이사 이용희 680311-*****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0 삼익아파트 102-409						
2005년 08월 10일 취임			2005년 08월 23일 등기			
2007년 02월 26일 사임			2007년 03월 08일 등기			
이사 이용희 680311-*****						
2007년 02월 26일 취임			2007년 03월 08일 등기			
2007년 07월 27일 사임			2007년 08월 08일 등기			
이사 배석철 580909-*****						
2007년 02월 26일 취임			2007년 03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배석철 580909-*****						
2010년 03월 31일 중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2013년 03월 31일 중임			2013년 04월 08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5일 등기			
2019년 03월 31일 중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대표이사 이용희 6803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0 삼익아파트 102-409						
2007년 02월 26일 취임			2007년 03월 08일 등기			
2007년 07월 27일 사임			2007년 08월 08일 등기			
이사 류현모 590830-*****						
2007년 04월 02일 취임			2007년 04월 16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사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이사 박일영 590329-*****						
2007년 07월 27일 취임			2007년 08월 08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사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대표이사 박일영 5903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60-1 한올아파트 110-1203						
2007년 07월 27일 취임			2007년 08월 08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사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감사 안희성 540605-*****						
2008년 03월 31일 취임			2008년 04월 10일 등기			
2011년 03월 31일 중임			2011년 04월 05일 등기			
2013년 03월 29일 사임			2013년 04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신인수 500104-*****						
2009년 03월 31일 취임			2009년 04월 09일 등기			
2012년 03월 31일 중임			2012년 04월 05일 등기			
2015년 03월 31일 중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2018년 03월 31일 퇴임			2018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류현모 590830-*****						
2010년 03월 31일 취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2013년 03월 31일 퇴임			2013년 04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박일영 590329-*****						
2010년 03월 31일 취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2013년 03월 31일 중임			2013년 04월 08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5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45분00초

등기번호	006020	
2019년 03월 31일 퇴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대표이사 박일영 5903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716 경남아너스빌1단지아파트 105-402	2010년 03월 31일 취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대표이사 박일영 5903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2로 30, 105동 402호(용산동, 경남아너스빌1단지아파트)	2013년 03월 31일 중임 2013년 04월 08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5일 등기	
2018년 05월 02일 사임	2018년 05월 15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류현모 590830-*****		
2013년 03월 31일 취임	2013년 04월 08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5일 등기	
2019년 03월 31일 중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감사 이장희 590813-*****		
2013년 03월 29일 취임	2013년 04월 08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5일 등기	
2019년 03월 31일 퇴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나도선 490402-*****		
2015년 03월 31일 취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2018년 03월 31일 중임	2018년 04월 09일 등기	
대표이사 배석철 58090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7번길 48, 107동 302호(개신동, 삼익아파트)		
2018년 05월 02일 취임	2018년 05월 15일 등기	
2019년 03월 31일 중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감사 최제용 640328-*****		
2019년 03월 31일 취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8년 05월 02일 설치 2018년 05월 15일 등기

전 환 사 채

~~채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총액: 금150,000,000원정~~

~~3)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50,000,000원정~~

~~4)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금150,000,000원정~~

~~5)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연3%~~

~~6) 이차지급 방법: 매분기(3개월)후취~~

~~7) 사채상환기간: 2년~~

~~8)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 각 사채의 권면금액 100%~~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45분00초

- 5/10 -

등기번호

006020

9) 상환조건: 원금은 전환사채 인수일로부터 2005년 12월 20일까지 일시 상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0) 전환조건

이 사채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조건: 1주당 2,000원(1주당 액면가 500원 기준)

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의결권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때에는 전환청구를 한 당해 연도 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각 지급일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은 전환청구를 한 익년 영업년도 초일부터 기산한다.

< 2003년 12월 17일 등기 >

< 2005년 11월 30일 전부 주식전환 2006년 02월 03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주주총회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로서 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하고 그 총수는 발행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 2002년 08월 20일 등기 >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회사의 임·직원

2. 임직원 외의 자로서 기술 및 경영증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원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 ~~라.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마.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 ~~바. 변리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영 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아. 세무사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가. 국·공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마.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 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등기번호

006020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4년 04월 13일 변경 2004년 04월 27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007년 04월 02일 변경 2007년 04월 16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조의 3에 준거한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2007년 04월 02일 변경 2007년 04월 16일 등기 >

등기번호	006020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회사의 임·직원

2) 임직원외의 자로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원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라.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마.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바. 변리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아.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 2007년 04월 02일 변경 2007년 04월 16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 2007년 04월 02일 변경 2007년 04월 16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기번호	006020
------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7년 04월 02일 변경 2007년 04월 16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1년 11월 27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1년 11월 27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열 램 용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